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34

발의연월일: 2021. 11. 25.

발 의 자:배현진·김상훈·김예지

박대수 · 윤영석 · 이달곤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추경호 • 황보승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처 및 결제수단에 따라 사용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그런데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 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 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 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를 "제1호, 제1호의2(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2)"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8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 에서 "소상공인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50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 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 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을 "금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뺀 금 액(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 호 중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추 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를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을 뺀 금액(2022년 및 2023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20"으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 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4
0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 사용금액 × 100분의 20
 -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40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직불카드등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기술관사용분) ×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	
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	<u>20</u>
<u>022년 12월 31일</u> 까지 재화나	23년 12월 31일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	
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	
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 4. (생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제1호의2(2022년 및 2023
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2022년 및 20
23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는 제6호의2)
,
<u>A</u> 1
호, 제1호의2, 제2호
<u>.</u>
1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 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 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신 설>

- 2. (생략)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신

100분
의 80, 2022년 1월 1일부터 2
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
<u>00분의 50</u> -
1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
서 "소상공인사용분"이라 한
<u>다) × 100분의 50</u>
2. (현행과 같음)
3
- -

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나.(생략)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
용분 및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
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예약이 기원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기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기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기상이 기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물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1일까지

	<u>100분의 40</u> -
	가.•나. (현행과 같음)
4.	
	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
	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
	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u>뺀 금액(2022년 및 2023년 과</u>
	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
	상공인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
	<u>다) × 100분의 40</u>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 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 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 · 신문 · 공 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 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 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 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 .	
	직불카드등사용
	분 및 도서・신문・공연・박
	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뺀 금
	액(2022년 및 2023년 과세연
	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상공
	인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
	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
	00분의 20
6.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 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 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 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 00분의 15 + (최저사용금 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 <삭 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가
<u>100</u>
분의 2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큰 경우: 신용
<u> 카드사용분 × 100분의 20</u>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
드사용분) × 100분의 40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직불카드등사 용분 + 도서・신문・공 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 분) × 100분의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 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 물관·미술관사용분) × 10 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 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 용분) × 100분의 40

<신 설>

6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 분의 2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 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 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 드사용분) × 100분의 4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 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대중교통이용 분 +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 액 - <u>신용카드사용분</u> -직불카드등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도서・신 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 100분의 50

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7. (생략) ③ ~ ⑩ (생략)